

제434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9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5)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7)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7)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5)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3)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3)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9)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0)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5)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2)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0)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4)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2)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1)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7)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5)
1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9)
2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7)
2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4)
2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4)
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9)
2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1)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8)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1)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8)
3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5)
3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9)
3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1)
3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2)
3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5)
3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9)
3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0)
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9)
3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5)
4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2)
4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4)
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
4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3)
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7)
4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4)
4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2)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1)
4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8)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9)
52.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8)
53.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7)
54.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55.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김지윤 외 52,5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1)
56.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곽인혜 외 50,4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9)
57. 유족의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박정애 외 52,5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7)

58.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5) 5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7) 5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7) 5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5) 5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3) 5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3) 5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9) 5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0) 5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5) 5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2) 5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0) 5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4) 5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2) 5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1) 5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7) 5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5)
..... 5
 1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9) 5
 2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7) 5
 2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4) 6
 2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4) 6
 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9) 6
 2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1) 6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8) 6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1) 6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8) 6

3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5)	6
3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9)	6
3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1)	6
3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2)	6
3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5)	6
3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9)	6
3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0)	6
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9)	6
3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5)	6
4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2)	6
4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4)	6
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	6
4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3)	6
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7)	6
4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6
4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4)	6
4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2)	6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1)	6
4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5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8)	6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9)	6
52.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8)	6
53.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7)	6
54.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6
55.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김지윤 외 52,5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1)	7
56.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곽인혜 외 50,4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9)	7
57. 유족의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박정애 외 52,5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7)	7
58.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1

(16시06분 개의)

○위원장 소병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은 후 의결하고 이어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6시07분)

○위원장 소병훈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8일 자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박희승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주민 위원님께서 보임하셨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제가 사임하고 박희승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으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이수진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주민 위원님께서 부임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5)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7)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7)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5)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3)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3)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9)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0)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5)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2)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0)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4)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2)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1)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7)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5)
1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9)
2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7)

2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4)
2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4)
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9)
2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1)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8)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1)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8)
3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5)
3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9)
3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1)
3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2)
3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5)
3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9)
3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0)
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9)
3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5)
4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2)
4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4)
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
4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3)
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7)
4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4)
4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2)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1)
4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8)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9)
52.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8)
53.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7)
54.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55.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김지윤 외 52,5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1)

56.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곽인혜 외 50,4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9)

57. 유족의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박정애 외 52,5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7)

○**위원장 소병훈** 의사일정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유족의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5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8일 31건의 법안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으로, 5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21건은 통합 조정하여 5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보운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세청장에게 의료기기 수입신고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허가 의료기기 등의 판매·임대 알선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려는 것으로 화장품관리협회의 소속 및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식약처장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업무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결정 및 변경 통지 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에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진로·직업 상담,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지원조치 중 ‘취업알선’은 다양한 지원 사항을 의미하는 ‘취업 정보 제공’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서영교 의원, 이수진 의원, 추경호 의원, 윤준병 의원, 윤호중 의원, 전재수 의원, 한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제명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 외에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히 하며, 위원회 명칭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시도에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전략위원회와 투자 방향 등을 미리 협의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며 인구전략위원회는 예산 사전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도걸 의원, 윤준병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복합단지 안에서 임상시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단지에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거나 상품화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부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표시를 법률에 명시하고,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되 금지 명칭을 이미 사용 중인 약국에 대하여는 6개월의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이수진 의원, 송재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화장품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도입,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클러스터 지정 및 산학연 협업 촉진 등 국가 차원의 지원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김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수진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8일 19건의 법안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7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효기간 연장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연장 취소’를 ‘등록 취소’로 변경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강선우 의원, 남인순 의원, 박상혁 의원, 박희승 의원, 정혜경 의원, 한정에 의원, 한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요소 고려 대상에 ‘증권 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즉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를 추가하고 기금운용지침에 ESG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김윤 의원, 이기현 의원, 한지아 의원, 서미화 의원,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체류 기간, 보험료 면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고액·장기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은행이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등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지정기준 심의 및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을 추가하고 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미화 의원, 김윤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연구 사업과 심혈관질환 조사통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수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종현 소위원장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청원심사소위원장 백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11건의 청원을 심사하여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8건은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하면서 민간 보험사 노동조합을 수신자로 포함하여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의료민영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5년 1월 구성을 마쳤고, 양대 노총에서 추천한 근로자대표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이미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 동의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과 유족의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으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증자가 될 우려가 있고 유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10월 12일 해당 법률안이 철회되어 이미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백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와 청원 심사에 애써 주신 김미애·이수진·백종현 소위원장님들과 비롯한 나머지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간사님 간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지아 위원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저는 역시 공감합니다. 환자의 안전, 의료의 질 그리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현재 의료기관별로 최소 정원 기준만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각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유연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처럼 병동 형태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진료 과목별로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이처럼 복잡한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간호사 대 환자 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자칫 획일적인 기준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인 인력배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것은 지역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 대학병원과 지방 중소병원의 여건은 전혀 다릅니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지방 의료기관은 간호사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병동 축소나 운영 중단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료취약지 환자 피해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교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의료인력 간 형평성 문제와 인력운영 혼선도 우려됩니다. 현재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적정 배치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적 기준을 두게 되면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전체 인력운영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에서는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의 법일수록 더 정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밀한 제도 설계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범사업과 사전연구 없이 입법이 먼저 추진된 점에 대해서는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복지부에서는 더 정교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장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우려해 주시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제도를 준비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적인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정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다른 의견……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제가 어제 법안심사위원장으로 심사에 참여하면서도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장관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한 말씀드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제명처럼 인구전략기본법 제정안의 성격을 띠고 제명도 결국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개 다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2명을 포함해서 매머드급입니다. 이들이 참여한 인구전략위원회인데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현재 저고위 위원장이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정말로 인구위기가 국가 존망을 가르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분이 맡아야 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16개 다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있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국회의 견제·감시는 어떻게 할지 또 현재 저고위 위원장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 해서 독립 부처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는데 그렇다면 입법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또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이미 개정했고 독립된 부처를 만들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확인했고 또 16개 다부처에서 인구 관련한 업무와 인력 분류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예산 사전협의권을 가졌기에 실질적인 기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심사하면서 국회의 견제·감시 기능으로 예산 사전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견제·감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현재 인구위기가 국가 존망에 결부되는 것인데 야당으로서도 반대만 한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또 정부가 책임지고 인구전략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니 믿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전부개정안이고 제정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입법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기존에 관련한 여러 토론회·공청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되 다만 그때는 독립 부처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정안은 독립 부처가 아니라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세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위원회가 입법취지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담보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약속한 대로 인구위기 시대에 인구전략 정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포함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병훈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먼저 법안 심사해 주신 김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 좀 더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별 인구 불균형이라거나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의 다양화라거나 인구이동 관련 된 부분까지 업무를 확장하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구 전반에 대한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우려사항 주셨던 부분들,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작동되게끔 보건복지부가 간사 부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상임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담아 주신 국회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도 충실히 준비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감시하실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년들의 의견도 수렴하게끔 부대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양한 계층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처럼 막강한 정부 권한을 가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꼭 장관님이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보건복지부가 간사 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어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사실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 의원과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정부는 간호법에서 배치기준을 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호법이 통과됐으니 다음 기회에 저희가 법안 심의를 할 때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실 때는 그냥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한다는

의견만 표하지 마시고 지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여러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적절한 인력 기준, 지역별 격차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조사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그 안들이, 개정안이 어떻게 적절하게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감당 가능하고 의료기관들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기준이 만들어져서 시행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도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들이 다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료기관과 병상과 전문 과목별 편차 또 지역 간의 편차를 어떻게 실행 가능하게 만들까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태조사 또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직종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 관리에 대한 정책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한지아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셨으니까……

○이수진 위원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소병훈 그럴까요? 그러면 한지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지아 위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각 해당 환자 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간호법의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범사업과 사전연구 전혀 없이, 연구들은 있었겠지만 이게 어떤 대대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리고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반대했다는 의견들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소위 심사에서는 쟁점 법안은 올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단체에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왔고 이게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무부처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이런 다음에 입법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료법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먼저 어저께 우리 소위가 저녁 7시 넘어서까지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열심히 심사를 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논의한 만큼 사실 꼼꼼히, 촘촘히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이 과연 현장의 요구와 그리고 실효성 있게 잘 정착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인지, 이것은 사실 여야 불문하고 위원들이 늘 이 자리에 계신 장관님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분들한테 요청드리고 잘해 달라고 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이 시행령까지 비롯해서 잘 만들어져서 정착이 돼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나 확인이 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이 법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만큼 유념하셔서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생·고령화법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이제 바뀌어서 위원회가, 그동안도 위원회가 있긴 했지만 앞으로 지역소멸 그리고 인구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이겨 낼 것인지 이 부분도 간사 부처로서 복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 진행되는 과정 과정을 잘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저희가 다 지역사회에서 내지는 어떤 대표성을 띠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각 상황들이 다르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해법도 다른 얘기들을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져서 또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청을 드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호법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한 7~8년 전에 도입이 됐나요? 그런데 참 실효성 없다. 그 법 처음 시행했을 때 보건의료인력 기준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줄 알았는데 인력은 물론이거니와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그 우려사항을 말씀드렸습시다만 그 우려사항도 점검하시되 이미 수십 년간 현장에, 아무리 보건복지부가 노동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력의 기준이라든지 처우라든지 또 모성보호라든지 당연히 지켜져야 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병원이 존재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건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책임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간호법을 제가 발의한 만큼,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 법입니다. 쟁점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는 수정에 대해서 제가 통 크게 양보를 해 드린 것이고 또 어저께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서 부대의견까지 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 간호사라든지 보건의료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방 중소병원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룰이 공정하게 작동이 되도록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잘 모르겠으면 노동부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병원 현장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가 되지 않도록, 환자도 행복하고 그 구성원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서 레이션(ratio)이 잘 정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벌써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아마 다녀왔을 겁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개발한 것 다 있어요. 다 덮어버리셨지요.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면 시행 못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그러나 다양한 우리 주체들의 의견을 담아서 진행하는 데,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좋은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사실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전략기본법을 이야기할 때 ‘저출산·고령사회’ 이것보다는 ‘저출생’ 이런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문제는 사실 우리들의 노력에 따라서,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조금씩 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도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부처에 노인 관련한 기구를, 좀 큰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했는데 인구부랄지 이런 부처가 생기면 거기에서 할 것이니까 그 뒤에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난번에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노인문제가 더 부각될 텐데요. 이것 포함해서 하얀트 노인문제, 고령사회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준비해야 되고 기구도 많이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청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소병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 비판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사법 제1조의2제1호 의료기사의 정의 관련해서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야 되는데 마치 제가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이 의원실에 두 번 찾아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충분히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의료계도 국민이요 의료기사단체도 국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다수의 환자, 국민, 즉 통합돌봄의 대상인 노쇠, 장애 또 환자분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더 대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개정안이 문제되는 게 의료기사의 정의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도 또는 처방 아래’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처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처방으로 할 때, 현행법에 보면 의료법과 약사법의 처방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처방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냐, 의사·의료기사·의료기관인지. 두 번째, 처방의 법적 구조가 정비되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데 이 개정안처럼 의료기관 밖에서 할 때 이 처방전을 환자한테 교부하는지 그리고 그 처방전에 의료기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삼자가 또 전달받을 수 있을지 이런 기본 구조 자체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셋째, 방문재활의료서비스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다. 의약품 처방과 동일 체계를 적용할지 별도의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를 둘지, 넷째는 약사법과 유사한 관리·통제 체계 부재다.

그러면 약사법은 의약품의 처방·조제·투약 전 과정이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이때 방문재활은 그러면 어떻게 할지, 수행 기준, 기록·보고 체계, 책임 및 감독 구조가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그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방문재활이 의료행위라면 그 의사의 관여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의료기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결론적으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할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소병훈 말씀하세요.

○김미애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고 필요한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책 없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래야지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해 오고 덮어 두고 이것을 상정하라고요? 상정해서 뭐 할 건데요. 그러면 그대로 처방을 포함시켜서 개정안을 통과해야 됩니까? 저는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대안을 마련할 정부의 책임이 있지요. 그것은 해 오지도 않고 마치 야당 간사인 제가 반대해서 안건 상정을 안 하는 것처럼 누가 이런 호도를 합니까?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통합돌봄 시행은 24년 9월 20일 날 법 제정되고 2년여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1년 6개월. 올해 3월 27일 시행됐는데 그전에 했어야지요. 제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아도 책임 있는 보건복지부라면 이런 체계를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통합돌봄법만 개정되면 됩니까, 의료법은 그대로 뒤도 되고? 그다음에 의료기사법만 개정하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대안을 마련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향후에도 제대로 통합돌봄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장관님, 잘 들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추가 검토해서 대안 마련하는 검토사항에 대해서 오늘 말

씀 주신 것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되면 원포인트라도 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소병훈 아무튼 제가 2년여 보건복지위 하면서 추가질의를 마이크가 켜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아무튼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김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서 스스로 켜졌나 봅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0항까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5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1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4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기에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 안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3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가족 동의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57항 유족의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 및 청원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도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품목으로 계속하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체투자에 대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들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향후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들께 더 나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법안소위 김미애·이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과 법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정은경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들에 대해 심사·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화장품법 개정으로 K-뷰티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안전, 국제협력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상 의료기기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의해 주신 김미애·이수진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오유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8.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6시58분)

○위원장 소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청원이 있습니다. 이에 그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등 11건의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2028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선민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를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 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행정실 보좌 직원과 국회 협력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김 윤 박주민 박희승 백종현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안상훈 이개호 이수진 이주영 장종태 전진숙 최보운
한지아

○청가 위원(2인)

남인순 윤호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신은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 김국일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대변인 현수엽
의료혁신추진단장 손영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9)

이상 3건 4월 2일 회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3)

4월 6일 회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6.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6.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3)

이상 2건 4월 7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7. 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7. 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8)

이상 3건 4월 8일 회부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8.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8.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6)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4. 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8.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8.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0)

이상 5건 4월 9일 회부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9)

이상 2건 4월 13일 회부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8)

이상 5건 4월 14일 회부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1)

이상 10건 4월 15일 회부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2)

이상 9건 4월 16일 회부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6.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6.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1)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6.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2)

이상 3건 4월 17일 회부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3)

이상 3건 4월 20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0.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3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0)

이상 2건 4월 21일 회부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1.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6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1.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1.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7)

이상 3건 4월 22일 회부됨

예방접종관리법안

(2026. 4. 22.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01)

4월 23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3.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8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3.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3.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4)

이상 3건 4월 24일 회부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7.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3)

4월 2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6. 허영 의원·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8)

4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5)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4. 7.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7.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7)

이상 3건 4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7)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4. 14.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2)

이상 2건 4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1.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0)

4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안 철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62)

4월 27일 발의자 철회 요구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4	-	6	1	1	16
식품의약품안전처	-	-	-	1	-	8
질병관리청	-	-	-	-	2	2